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1121
----------	------

2023년 9월 8일
보건복지위원회

I.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3년 8월 14일 최기찬 의원 외 31명
2. 회부일자 : 2023년 8월 21일
3. 상정일자 : 제320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2023년 9월 6일 상정·의결(원안 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 (최기찬 의원)

1. 제안이유

- 노인 인구의 증가 추이에 따라 노인의 성 관련 문제도 점증하고 있음.
- 특히, 노인 성범죄의 경우 대상의 특성상 암수범죄가 많아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범죄의 실태파악 및 근본적 해결이 어려운 현실임.
- 이에 조례 개정을 통해 서울시 차원에서 노인의 건강한 성 문화 정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인의 건강증진 추진의무에 노인 성인식 개선사업을 추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노인의 심신건강과 건강한 노후를 위한 시장의 건강증진 사업 추진사항에 노인 성인식 개선사업을 추가 규정함.
(안 제7조제1항제6호 신설)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노인복지법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미첨부사유서)
다. 입법예고 : 2023. 8. 24. ~2023. 8. 28.(의견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Ⅲ.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주병준)

1 개정안의 취지

- 개정(안)은 현행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기본조례」 제7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강증진 사업에 ‘노인 성인식 개선사업’을 추가하여 노인에게 올바른 성(性)지식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인식 교육 등을 통하여 건전한 성문화를 조성하고자 제안되었음.

2 개정안의 주요 사항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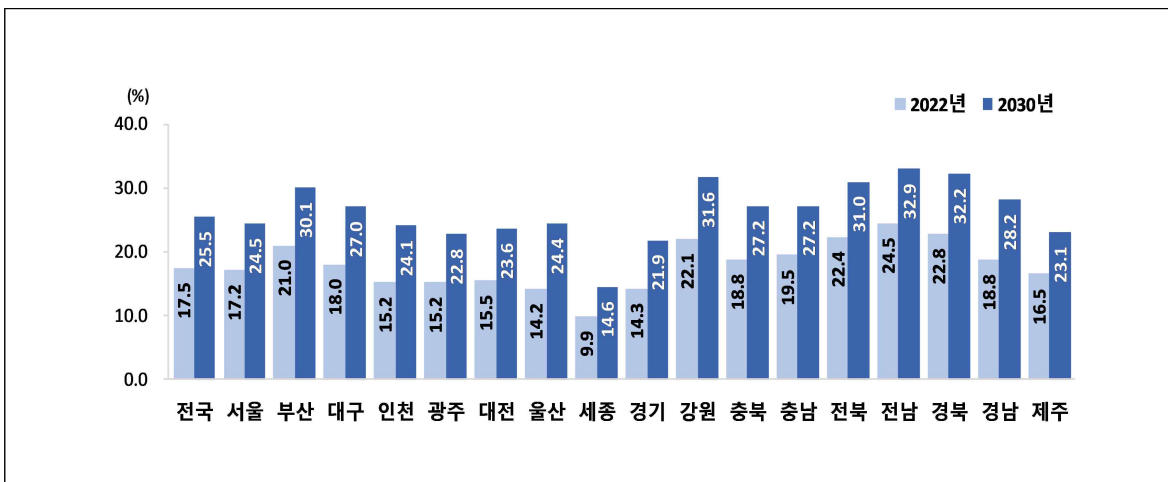
- 본 개정(안)은 노인에게 올바른 성지식에 대한 정보제공 및 인식 교육을 위해 현행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기본조례」 제7조제1항의 각호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강증진사업에 노인 성인식 개선사업을 추가로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

현행	개정안
<p>제7조(건강증진) ① 시장은 노인의 심신건강과 건강한 노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p> <p>1. ~ 5. (생략)</p> <p><u><신설></u></p>	<p>제7조(건강증진) ① -----</p> <p>-----</p> <p>-----</p> <p>-----.</p> <p>1. ~ 5. (현행과 같음)</p> <p><u>6. 노인 성인식 개선사업</u></p>

<p>6. ~ 8. (생략)</p> <p>② (생략)</p> <p>제15조(노인복지주택의 공급)</p> <p>① (생략)</p>	<p>7. ~ 9. (현행 제6호부터 제8호까지와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5조(노인복지주택의 공급)</p> <p>(현행 제1항과 같음)</p>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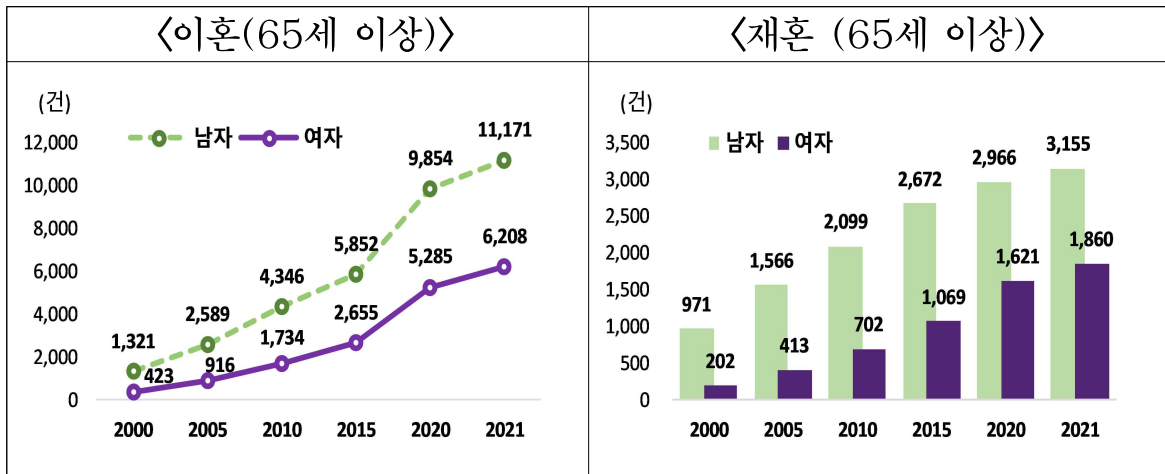
- 서울시 전체 인구는 점진적으로 감소가 예상되는 반면, 노인인구의 비율은 증가하여 인구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의하면 '2022년 고령인구 비중이 20% 이상인 초고령사회인 지역은 전남(24.5%), 경북(22.8%), 전북(22.4%), 강원(22.1%), 부산(21%) 5곳이며 '2028년에는 세종(13.4%)을 제외한 우리나라 모든 지역이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됨.¹⁾

〈표1〉 지역별 고령인구(65세 이상)비중



1) 통계청, 고령화통계(2022~2030)

- 2022년 서울시 인구 9,487천 명 중 65세 이상은 1,620천명으로 17.2%이며 서울시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015년 19.9%, 2030년 24.5%, 2040년 32.4%로 예상되고 있음.
- 이러한 고령화 추세에 동반하여 길어진 노후의 삶을 보다 가치 있게 보내기 위해 노년기 성에 관한 관심과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지만 최근 노인의 성과 관련된 사회적인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임.
- 노인의 성과 관련된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 65세 이상 노인의 이혼 건수는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통계청에 따르면 61세 이상 성매매 위반 범죄자는 20년 191건, 21년 577건, 218년 622건으로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임.



※자료: 통계청 고령자 통계

- 이러한 상황에서 노인의 성 관련 질병 및 노인 대상 성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성인식 개선교육의 필요성이 있다 하겠음.
- 경기도는 2017년 노인 성인식 개선사업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노년기 올바른 성 정보 제공 등을 통한 건전한 성문화를 조성하고 활기찬 노년을 누릴 수 있도록 노인 성인식 개선사업 추진하고 있음.

-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노인 성인식 개선을 위한 성교육 및 상담, 전문인력 양성, 교육 자료 제작, 인식개선 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음.
- 현재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인식 개선사업은 노인종합복지관 또는 경로당 등을 중심으로 노인 성교육이 진행되고 있으나 대부분 일회성 또는 특강 형식으로 진행되어 지속적이지 못하고 전문강사도 부족한 실정임.
- 본 개정조례안은 초고령화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노인의 성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비화됨에 따라, 노인을 대상으로 한 성인식개선사업을 통해 노인들에게 성지식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현실에 맞는 성에 대한 바람직한 태도와 인식을 정립하게 하려는 것으로 판단됨.

3 집행부서 의견

- 집행부서인 어르신복지과에서는 본 조례 개정안은 현행 조례의 노인 건강증진 사업의 종류에 “노인 성인식 개선사업”을 추가하는 것으로서, 노인의 심신건강과 건강한 노후를 위한 조례 개정에 이견 없음

4 종합 검토 의견

- 급격한 고령화 현상은 노인뿐 아니라 사회구성원 전체에게 심각한 영향을 주는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음. 특히 노인대상 또는 노인에 위한 성매매, 성범죄 등이 증가하고 있어 노인들의 건전한 성인식 향상 및 노년의 성교육 프로그램을 위한 노인 성인식 개선사업은 필요하다 하겠음.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 가결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기찬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1121
----------	------

발 의 년 월 일: 2023년 08월 14일

발 의 자: 최기찬, 김경훈, 김규남,
김성준, 김영철, 김인제,
김형재, 남창진, 민병주,
박강산, 박수빈, 박승진,
박영한, 박칠성, 봉양순,
서상열, 송도호, 신복자,
아이수루, 왕정순, 유정인,
, 유정희, 윤기섭, 윤영희,
이병도, 이영실, 이원형,
이종태, 임규호, 임종국,
정준호, 홍국표 의원(32
명)

1. 제안이유

- 노인 인구의 증가 추이에 따라 노인의 성 관련 문제도 점증하고 있음 .
- 특히, 노인 성범죄의 경우 대상의 특성상 암수범죄가 많아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범죄의 실태파악 및 근본적 해결이 어려운 현실임.
- 이에 조례 개정을 통해 서울시 차원에서 노인의 건강한 성 문화 정착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인의 건강증진 추진의무에 노인 성인식 개선사업을 추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노인의 심신건강과 건강한 노후를 위한 시장의 건강증진 사업 추진 사항에 노인 성인식 개선사업을 추가 규정함.(안 제7조제1항제6호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노인복지법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7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노인 성인식 개선사업

제15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조(건강증진) ① 시장은 노인 의 심신건강과 건강한 노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 진하여야 한다.</p> <p>1. ~ 5. (생 략)</p> <p><u><신 설></u></p> <p>6. ~ 8. (생 략)</p> <p>② (생 략)</p> <p>제15조(노인복지주택의 공급) ① (생 략)</p>	<p>제7조(건강증진) ① ----- ----- ----- -----.</p> <p>1. ~ 5. (현행과 같음)</p> <p>6. <u>노인 성인식 개선사업</u></p> <p>7. ~ 9. (현행 제6호부터 제8호 까지와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5조(노인복지주택의 공급) (현 행 제1항과 같음)</p>